



제437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359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광상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29.
3. 회 부 일 : 2025.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은 제294조의4에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0조의 2는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경우 사건의 경과 및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등 피해자 등의 절차적 권리 보장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III. 검토의견

1.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30조의2제2항은 소년 보호사건 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의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생략) <u><신설></u>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의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나. 검토의견

-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¹⁾²⁾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게 보호처분, 형사처분 등 형사제재를 부과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수행하는 소년사건 심판 절차를 주된 규율 대상으로 함.
- 동법은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그 건전한 성장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법률이므로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처우와 특별예방을 강조하는 데 특징이 있음.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되,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인정하고 있음(제30조의2)³⁾.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⁴⁾는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
- 1)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이러한 점에서 「소년법」은 반사회적 소년의 교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후견주의적 법률로 이해되고 있음. 오영근 외 15인, 「소년법」, 박영사, 2021, P. 13-18
 - 3)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4)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 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소년법」 제30조의2는 소년부 판사가 어떤 경우에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소년법」은 소년의 인격 보호와 낙인효과 방지를 통해 건전한 성장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비공개(제24조제2항)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 등의 보도를 금지(제68조제1항)하며, 조회 응답을

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한(제70조제1항)⁵⁾하고 있으며, 「소년심판규칙」은 소년보호 사건 관계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규정⁶⁾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에게까지 소년 보호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 하게 될 경우, 신청권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소년의 개인 정보 등이 누설될 수 있으며, 이는 동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됨.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은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서만 시작되는 반면, 소년보호절차는 검사의 송치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의 송치나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 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의 통고에 의하여서도 시작되는⁷⁾ 차이가 있음.

또한 소년심판은 형사소송에서처럼 대립하는 당사자를 전제로

5) 「소년법」 제24조(심리의 방식)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소년심판규칙」 제10조(비밀유지의무) 소년 보호사건을 다루는 관계인들은 조사, 심리, 소환 또는 집행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년의 출생,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사생활의 비밀이 소년 및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 2014, P. 4

하는 대심적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고, 대상 소년을 객체로 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후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검사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음.

따라서 소년보호절차의 구조와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형사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둘째,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라는 문구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적용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소년보호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범위가 너무 넓어 「소년법」의 비공개 원칙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은 재판장은 열람·등사 신청 시 검사, 피고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서

검사, 피고인을 통지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의 기준이 해석상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2